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8 조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반드시 기간을 표기하고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시 변경사항 없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센터의 서비스는 종료된다.
3. 재계약을 원할 시에는 관련 기준에 근거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장기요양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계약 목적)

1.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 내에서 또는 가정방문 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신체와 정신적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자립을 도와서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0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2.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전월 이용료를 매월 중순에 문자메시지로 금액을 안내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4. 비용의 납부는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2-937-876900 도경노인복지센터)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15%)
6.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감면 처리된다.(6%, 9%)
7.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본인부담금 없다.(0%)
8.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 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 21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
-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
- ③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④ 서비스 이용자의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참관할 권리
- ⑤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
- ②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③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할 의무
- ④ 보호자 등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
- ⑤ 장기 출장 등으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2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3. 6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번히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센터 운영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요양보호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 6.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23 조 (계약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은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 1.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적극 협력한다.
- 2.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은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 파손 등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며,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발생한 돌발적인 안전사고 및 제3자의 귀책사유,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은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